

# 전남과학대학교

##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### I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

평가대상	입학전형	계열	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	문항 번호	하위 문항 번호	계열 및 교과								교과 외	
						인문사회			수학	과학					기타
						국어	사회	도덕		물리	화학	생명 과학	지구 과학		
면접· 구술고사	전 전형	전 계열				해당없음									

- ※ 면접학과 : 간호학과 정원 외, 물리치료과, e스포츠과, 특수장비과, 특수통신과, 국방계열  
 ※ 지원자 확인을 위한 면접 실시(교과관련 문항 출제 없음), 논술 등을 시행하지 않음

### II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구분	판단기준		
	항목	세부내용	이행 점검
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	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	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	○
	2.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	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	해당없음
		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	해당없음
		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	해당없음
	3.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	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	○
		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	○

#### 1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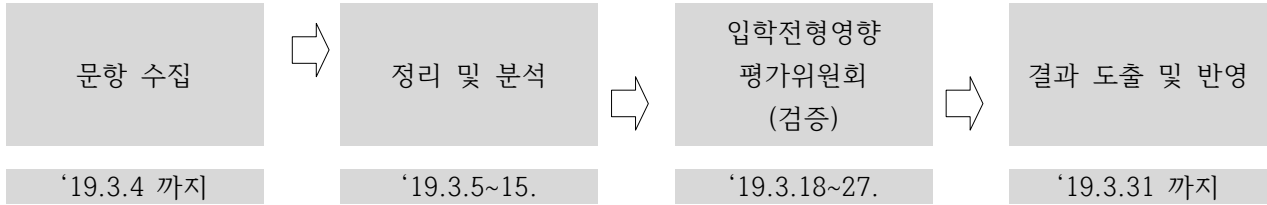
-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한 근거 규정 : 학칙 제21조의2

제21조의2(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)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방법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.

#### 2.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- 내부위원 구성(84%) : 입학본부 3명(당연직 포함), 학내 전임교수 2명
- 외부위원 구성(16%) : 고교교사 1명,

### 3. 2019학년도 선형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


### 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

- 각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종합적인 평가 및 확인을 위한 면접평가 실시
-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며, 선형학습이나 사교육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면접평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질문은 지양
- 우리 대학 모든 입학전형 면접평가에서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Ⅳ.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- 면접이 있는 전 전형, 전 계열 모집단위에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
- 향후에도 면접평가에 교과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


### 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- 면접에서 교과관련 문항 출제하지 않음
  - 2019학년도와 동일하게, 향후 대학입학전형에서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시행 시 교과관련 문항 출제를 완전히 배제하여 면접 시행
- 면접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  - 면접평가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학전형에서의 선형학습 유발 요인을 완전히 배제
- 면접평가 환경 개선
  - 면접평가 위원과 수험생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환경 정착 노력

## VI. 부록

### 1. 위 II-1의 전남과학대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

[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] 5-1-47-1

 <b>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</b>			
분류번호	제정일	최근 개정일	개정차수
위원회 5-1-47	2019. 3. 4.	-	1차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전남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21조의2(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)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중 1명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면접평가표 심의
2.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
3. 영향평가 실시 방법,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심의
4.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

**제4조(임원의 선임)** ①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.

**제5조(임원의 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동일하며, 위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임무)**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다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② 회의는 학년도 입학전형 시작 전과 마감 후에 갖는다.

**제8조(회의록)** 간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